

#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의결주문

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·인력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실조사 의뢰(안 제3조)

-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#### 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
2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
3.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나. 사실조사 협약 등(안 제4조)

-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협약서는 [별표 1]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, 위탁의 범위, 협약기간, 업무의 위임, 처리기한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관련 기관 또는 단체(안 제5조)

-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

1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.

2.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[붙임 3]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1. 23 ~ 2. 12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3)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: 저촉사항 없음.

##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"사실조사"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사실조사 의뢰)**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2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3.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**제4조(사실조사 협약 등)**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는 [별표 1]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, 위탁의 범위, 협약 기간, 업무의 위임, 처리기한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)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

1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
2.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 1]

##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및 「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평창군”라 한다)가 ○○○ (이하 “○○○”이라 한다)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“평창군”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“○○○”에게 의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의 범위)** 업무의 범위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“평창군”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업무(이하 “사실조사”라 한다)로 한다.

**제3조(협약기간)**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협약만료일 30일 이전까지 협약의 연장여부에 대하여 상호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비용)** 이 협약에 따른 소요비용은 “○○○”이 전액 부담한다.

**제5조(신의성실)** “평창군”과 “○○○”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준수한다.

**제6조(처리기한)** “평창군”이 “○○○”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“○○○”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“평창군”에게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책임과 의무)** ① “○○○”은 「담배사업법」 등 관련법령 및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사실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“○○○”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, 대장 등 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·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“○○○”은 “평창군”이 요구하는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“평창군”의 지도·감독과 민원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④ “○○○”은 사실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“○○○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⑤ “○○○”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,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,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약의 해지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“평창군”은 “○○○”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“○○○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“○○○”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허위, 또는 무리한 조사 등 불성실한 조사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
4.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
5. “○○○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6. 천재지변 등으로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
7. “평창군”과 “○○○”이 쌍방 간 본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

